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4. 12. 2.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4년 11월 8일
-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24년 11월 15일
- 라. 상정일자: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4. 11.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일호 도시국장)

가. 제안이유

- 도시계획시설 (최초)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법적 기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최초)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대하여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영등포구 구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법적 기준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

○ 검토 결과

- 신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로로 분류되어 있는 신길동 263-37~321-1(소로2류)와 신길동 4902-16~4902-5(소로3류)는 신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라 추가 검토 예정이며,

-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의 도로로 분류되어 있는 영등포동5가 40-4~105-1, 영등포동5가 111~41-2, 영등포동5가 33-29~6-1는 모두 중로2류로 영등포구 재정비촉진지구 1-11구역 및 1-12구역 내 도로로 향후 재개발 추진 시 도로 개설 예정임.

- 신길 재정비촉진지구의 도로로 분류되어 있는 신길동 424-3~ 340-1은 소로2류로 신길 재정비촉진지구(13구역) 내 도로로 향후 재개발 추진 시 도로 개설 예정임.

- 신길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도로로 분류되어 있는 신길동 107-11~178-21(소로3류), 신길동 188-284~194-6(중로2류), 신길동 193-1~220-56(중로3류)는 신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부지 내 도로로 향후 재개발사업 추진 시 도로개설 예정임.

- 신길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공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신길동 166-44일원(어린이공원), 신길동 192-133 일원(소공원)은 신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부지 내 공원으로 향후 재개발 사업 추진 시 공원 조성 예정이며,

-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일부)의 공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신길동 4934-4 일원(근린공원)은 사업 구간 일부가 메낙골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향후 사업 추진에 따라 공원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재정비 사업 및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예정된 도로 개설 및 공원 조성 등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것임.

4. 심사결과: 의견 없음.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제 455 호
----------	---------

제출연월일: 2024. 11.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도시계획시설 (최초)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법적 기준

- 1)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 및 해제에 관한 의견 등
 -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 2)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는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
 - 제1단계 집행계획 :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 제2단계 집행계획 :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1) 대상 시설 현황 : 총 12개소(2024.11. 현재) → 준치
- 2) 단계별집행계획 : 1단계 11개소, 2단계 1개소

구 분	계		1단계		2단계	
	개소	면적(m ²)	개소	면적(m ²)	개소	면적(m ²)
합 계	12	35,122	11	30,488	1	4,634
도 로	9	22,076	9	22,076	0	0
공 원	3	13,046	2	8,412	1	4,634

3. 추진경과

가. 추진경위

- 2000.01.28.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신설(시행 2000. 7. 1.)
 - ※ '00.7.1.을 기산일로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7.1. 실효
- 2020.06.25.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
- 2020.07.0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 ※ 20년 이상 미집행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괄 해제
- 2020.12.23.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구공고 제2036호)
- 2022.12.29.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구공고 제2250호)

붙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목록 1부.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목록

연번	분류	위치	시설명	규모			고시일	해제에 관한 의견	단계별 집행 계획	비고
				폭원 (m)	연장 (m)	면적 (㎡)				
1	도로	신길동 263-37 ~ 321-1	소로2류	8	103	824	2006-02-16	-	1 (비재정)	신길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도로	신길동 4902-16 ~4902-5	소로3류	6	97	582	2006-02-16	-	1 (비재정)	신길 지구단위계획구역
3	도로	영등포동5가 40-4~105-1	중로2류	15	178	2,670	2005-12-22	-	1 (비재정)	영등포 재정비축진지구
4	도로	영등포동5가 111~41-2	중로2류	15	225	3,375	2005-12-22	-	1 (비재정)	영등포 재정비축진지구
5	도로	영등포동5가 33-29~6-1	중로2류	18	160	2,880	2005-12-22	-	1 (비재정)	영등포 재정비축진지구
6	도로	신길동 424-3 ~ 340-1	소로2류	8	155	1,240	2007-11-29	-	1 (비재정)	신길 재정비축진지구
7	도로	신길동 107-11 ~178-21	소로3류	5	202	1,010	2009-08-20	-	1 (비재정)	신길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8	도로	신길동 188-284 ~194-6	중로2류	15	465	6,975	2009-08-20	-	1 (비재정)	신길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9	도로	신길동 193-1 ~220-56	중로3류	12	210	2,520	2009-08-20	-	1 (비재정)	신길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10	공원	실길동 166-44 일원	어린이 공원			5,749	2009-08-20	-	1 (비재정)	신길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11	공원	신길동 192-133 일원	소공원			2,663	2009-08-20	-	1 (비재정)	신길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12	공원	신길동 4934-4 일원	근린공원			4,634	1940-03-12	-	2 (비재정)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